

KPMG Tax

Korean Tax Update

March 2019, Issue 57

[조세뉴스]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전문보기]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는바,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해짐.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의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국세청,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전문보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13.(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 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음.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해 나가 면서 정기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의 조사절차 준수 정 착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또한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되, 일자리창출 기업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증대 및 혁신성장 노력 을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EU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전문보기]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3월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정부는 '18년 상반기 연구용역 관계부처TF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함. 한국이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EU측에 통보함에 따라 3월 12일 ECOFIN은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함.



[예규·판례]

[판례1]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과세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국내에서는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한·일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임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 두 60847 판결

• 프로축구선수인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일 조세조약에 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 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가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과세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한 반면 국내에서는 축구국가대표 선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등의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이므로 결국 원고는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아야 함

[판례2] 구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면세유 관련 가산세는 공급된 면세 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지 아니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 두 58387 판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는 출고지시서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면세유 부정유통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음을 전제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사업요령이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마련한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위법령을 구체화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면세유를 공급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판례3]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법 2019. 1. 10. 선고 2018 구합 3498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 제15조 제4항 제1호)하고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자전환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를 평가·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출자전환의 경우에 이를 변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회수할 수 없는 대손으로 보게 되면, 출자전환을 선택한 이 사건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보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와 같은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합병신 주의 보유기간은 포함할 수 없음

조심 2018 서 4082, 2019. 2. 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같이 당초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가 된 경우 당초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합병신주의 보유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의 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합병신주의 보유기간은 포함할 수 없음.



[심판례2]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심 2018 중 0952, 2019. 2. 15.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 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 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17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50%, 20대 이상 판매시 70%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임차지원금의 경우 17대 미만을 판매하였음에도 지원받은 신설대리점의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 아 동 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 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이 외 처분청에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지원기준과 상이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과세근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처 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과 제29조 제3항과 관련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3]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하는 행정업무 성격의 업무수탁용역은 자산유동화 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용역 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6 서 3294, 2019. 2. 15.

•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 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청 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수탁용역은 예산의 수립과 검토, 사업보고서 등 법령상 요구되는 각 종 공시 또는 신고의 이행, 각종 조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 등 대체로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의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자산유동화법에서 자산관리자의 요건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무수탁용역의제공자는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자산관리자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탁용역은 대체로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제공되는 용역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4]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증여의 제이익을 제외할 수 없음

조심 2018 서 1171, 2019. 2. 18.

•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1조의6)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 장 등 이익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별도로 차감한 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례5]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음

조심 2018 서 4780, 2019. 2. 27.

•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약 3주)에 불과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필름의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세청도 영화필름을 즉시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법인이 1995.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 점(국세청 법인46012-3174, 1995. 8. 9. 참고), 청구법인은 해외판권사와 영화의 국내독점 판권을 12년 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판권료를 지급하였으나, 위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품(재고자산)으로 하여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적정한 세무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12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6]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유상증자된 자본금을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원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8 서 3442, 2019. 3. 5.

•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쟁점유상증자에 출자전환 및 현물출자를 한 것은 국제거래이므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신주인수행위는 취득 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



안하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대금을 납입한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유상증자된 자본금을 감안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0원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도 청구법인과 같은 조건으로 균등증자에 참여하는 등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산(채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7]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가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선박 등 임대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조심 2018 중 0817, 2019. 3. 15.

•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제4호에서「법인세법」제5호(사업소득) 및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을, 제6호에서「법인세법」제98조의4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을,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리스료가 국조법 제28조에 의하여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세법 상으로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사업소득) 또는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제4호(선박 등 임대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98조의4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그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예규1]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 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 12. 20.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던 수주비를 2018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감소)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삼정KPMG '가업승계 드림팀' 시동 [기사보기]

삼정 KPMG 가 국내 최초로 경영권승계 전문팀을 구성해 원스톱자문에 나섬.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승계자문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제공하는 절세자문에 그쳤으나, 삼정 KPMG는 세금자문 뿐만 아니라 기업매각 및 인수(M&A), 승계후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며 차별 화를 시도할 계획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9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